제896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 3.5톤 이상의 차량을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(강화) ○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대상인 승용·승합차의 총 중량 기준(3.5톤 미만)을 삭제하여 관계 법령(자동차관리법)의 자동차 분류 기준과 일치화 * (현행) 차량 총 중량 3.5톤 미만 → (개정안) 제한 규정 삭제 ▶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2. 전기자동차 효율등급 신고·표시의무 신설(강화) ○ 전기자동차 효율등급 신고·표시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, 효율 수준별 등급 부여를 위한 등급 기준 마련 * (현행) 전기자동차의 경우 효율만 표시 → (개정 안) 효율 및 효율등급 표시 ▶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9조, 제10조	1.비중요 2.비중요